



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JAN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해외직구에 접목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검증

관세청은 4 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X-Ray 를 본격 개발해,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또한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해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 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전자상거래 반입현황 : '13년 1,116 만건 → '15년 1,584 만건 → '17년 2,359 만건)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이후,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은 전자상거래업체 (주)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 대한통운(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해 기술검증을 수행했고, AI X-Ray 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조세신문]

★ KCC 의 1 분강의 ★

관세청은 AI 의 딥러닝(Deep Learning)에 기반한 X-RAY 판독기술을 도입하여 승객의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자동으로 판독,검출,분류하여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항공 보안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딥러닝(Deep Learning) : 기존에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신경망 분석을 최근에는 컴퓨터가 추상화된 특징 표현을 스스로 학습하여 분석,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수출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이 모든 관련자에게 공유되고 위변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 무역 금융사기나 밀수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블록체인(Block Chain): 공공의 거래장부라고 불리며 거래장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을 공동관리한다는 뜻이다. 서버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 없이 각 거래당사자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게 되는 기술을 말한다.



내년 관세 인하 물품 69→79 개...농수산물 13 개 관세 ↑

신성장 산업과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79 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내년에 인하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14 개 물품은 관세를 높여 매긴다. 농어가 보호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 년 동안 실시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는 반대로 기본관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매긴다. 취약산업 보호,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은 79 개로 올해보다 10 개 늘어난다. 관세 지원액은 올해 대비 17.1%(925 억원) 증가한 6236 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물품은 26 개에서 36 개로 증가한다.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설비·원재료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원유, 가스, 철강 부원료 등 기초 원자재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다만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1 년이 아닌 내년 1~3 월과 10~12 월이다. 난방 수요가 많은 시기에만 관세를 인하한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석유, 피혁, 염료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물품은 14 개다. 이중 13 개가 농수산물이다. 냉동공치, 냉동명태, 활돔, 표고버섯, 고추장 등이다. 13 개 농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수준은 올해와 같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감안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KCC의 1분강의 ★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부에서 달걀값 안정을 위해 달걀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최대 30% 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서 수입 달걀을 싼 값에 공급해 국내 달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물품에 기본세율을 100분의 40을 감안 비율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의 촉진이 요구될 때는 기본관세율을 40%까지 감하여 부과하고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때는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세율은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세는 주핵심이 '국내산업보호'가 그 목적이다. 올해부터 여전히 취약한 농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며 올해 중국의 관세인하됨에 따라 한국산 농수산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관세 부과를 통해 관련업계도 보호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관세청, 내년부터 페루와 AEO MRA 전면 이행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이달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AEO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와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78 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행정 제도다. 아울러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은 AEO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신속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페루 AEO MRA가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페루와 교역량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번 AEO MRA 전면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와 텔레비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안]

★ KCC 의 1 분강의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물류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AEO 상호인정약정으로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그 나라의 AEO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 받도록 하는 약정이다.

따라서 MRA 가 체결되면 수입 검사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AEO 화물 우선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등 MRA 혜택 적용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발생합니다.



관세청 "내년 對중국 수출품목 1679 개 관세 완전 철폐"

새해 대(對)중국 수출품목 1679 개, 수입품목 1433 개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중국 및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 관세철폐 및 인하되는 품목이 있다.

< '19년도 세율 완전철폐 품목 >

對중국 수출				對중국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8443.39	감열복사기	4	0	2206.00	기타 발효주	3	0
6203.33	남성용바지	3.5	0	4203.10	가족의류	2.6	0
9202.10	바이올린,첼로	3.5	0	5007.20	견직물	2.6	0
9205.10	트럼펫,트럼본	3.5	0	5801.26	서닐직물	2.6	0
6204.62	여성용바지	3.2	0	5804.10	인조섬유 직물	2.6	0
對베트남 수출				對베트남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7020.00	유리제품	8	0	2203.00	맥주	6	0
8521.90	영상재생기기	7	0	0305.63	멸치젓	4	0
6406.20	신발 뒷굽	6	0	0305.69	조기	4	0
8215.20	주방·식탁용품	5	0	0712.39	표고버섯	4	0
8509.40	그라인더, 믹서	5	0	2009.31	레몬주스	4	0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중국 FTA에 비해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것은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돼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2018년도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2018년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2018년도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2018년도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뉴스 1 코리아]

★ KCC의 1분강의 ★

FTA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도 있으나 대부분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에는 다음해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여 더 유리한 기간에 수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며 APTA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 "통과선하증권 없다고 특혜관세 적용 일률배제 안돼"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고 특혜관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제조지에서 제 3 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까지 직접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대법원 3 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발류 수입판매업체 A 무역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은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해 운송된 경우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며 그 요건으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통과선하증권을 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엔 다른 신빙성있는 대체자료를 내 전적으로 운송상 이유로 인한 단순경유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통과선하증권의 개념정의나 인정기준에 관해 운영절차나 관련 규칙, 법령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미제출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단지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APTA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A 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 생산 물품을 홍콩을 거쳐 수입하며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2006년 9월 발효된 APTA는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중국의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으로, 회원국간 무역촉진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세관은 A 무역 수입물품이 APTA 비회원국인 홍콩을 거쳐 운송됐는데도 이 상품을 수출한 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으며 2013년 7월과 9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무역은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총 3550만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 심은 'APTA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관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고, 통과선하증권 등 4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산지증명절차 불이행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세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통과선하증권 제출만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다른 증명서류에 의해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며 2 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출처:뉴스 1 코리아]

★ KCC 의 1 분강의 ★

수입국에서 APTA 및 FTA 세율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말그대로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3 국을 경유하지 않고 운송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3 국을 경유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은 특히 수출국이 중국인 경우 지리적인 사유로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늘 이슈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 국 경유시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는 크게 2 가지로 통선하증권 과 비가공증명서가 있습니다. 통선하증권의 경우 수출국에서 출항하기전에만 발행이 가능하고 비가공증명서 또한 출항일로부터 3 일내에만 발급해주고 있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3 국 경유 사실을 아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화주분들께서는 3 국경유 여부에 대해 선사 또는 현지파트너 포워더에게 정확한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원활한 통관에 도움이 됩니다.